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2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의 검토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2.
3. 회부연월일 : 2024.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등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원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72조의3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령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의 1인당 대위변제 한도 5,000만원을 필요시 주무부장관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② (생략) ¹⁾ <u><신설></u>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을 보호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회장은 주무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익금 또는 중앙회의 공제금과 자기앞수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새마을금고법」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 한다.

1.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
 2. 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금고의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환급이 필요한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 그 밖에 준비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② 제1항에 따른 변제의 범위 및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안의 검토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가 이용자의 예금 등을 환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대위변제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²⁾ 현행법 시행령은 1인당 대위변제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³⁾⁴⁾ 개정안은 필요시 이 한도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러한 대위변제를 포함한 예금자보호제도는 민간 경제주체의 예금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경제 전반에 여유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가지는 반면, 개별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역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위변제 한도의 확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 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3)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참고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은행, 농협·수협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도 동일한 한도(5,000만원)를 적용받고 있음.

또한 현행 대위변제 한도는 2001년 1월 1일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후 22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 및 예금규모 증가 수준 등도 대위변제 한도 확대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01~2023년간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69.9%(GDP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2001~2023년간 47.2%) 상승하였고, 예금규모는 예금은행 원화예금 평잔 기준 362.6% 증가하였음.

[2001~2023년간 물가상승률 및 예금규모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물가지표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65.7	67.5	69.9	72.4	74.4	76.1	78.0	81.7	83.9	86.4	89.9	91.8
	GDP디플레이터 (2015=100)	74.6	76.9	79.5	82.0	82.9	82.7	84.7	87.1	90.2	92.7	93.9	95.1
예금규모	예금은행 원화예금 평잔(조원)	420	484	527	543	546	559	576	625	705	827	909	964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가율
물가지표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93.0	94.2	94.9	95.8	97.6	99.1	99.5	100.0	102.5	107.7	111.6	69.9%
	GDP디플레이터 (2015=100)	96.0	96.9	100.0	102.0	104.3	104.8	103.9	105.5	108.4	109.8	-	47.2%
예금규모	예금은행 원화예금 평잔(조원)	993	1,038	1,109	1,191	1,255	1,338	1,443	1,597	1,769	1,917	1,943	362.6%

- 주 1)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가 구매하는 주요 소비재(상품·서비스) 가격을 조사한 지표
 2) GDP디플레이터: “(명목GDP/실질GDP)×100”으로 도출되며, 주요 소비재 외에 모든 국내 최종 생산물의 가격 변화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물가 지표
 자료: 물가지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 예금규모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개정안은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위변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도 대위변제 한도(5,000만원)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장관 입안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현행체계 대비 특별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한편, 전술하였듯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일반은행, 농협은행·수협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도 동일한 예금자보호제도를 두고 있으며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고 있어,

필요시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의안번호 22027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8. 12.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및 「의안번호 22027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8. 12.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이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그 심사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겠음.

5) 행정입법은 법령안의 입안 → 관계기관 협의 → 각종 사전영향평가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됨.

이 중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① 각종 사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통계기반정책평가·성별영향평가·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자치분권사전협의), ②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입법예고(40일 이상), ③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있으나, ① 사전영향평가 및 ③ 규제심사는 대위변제 한도 확대와 관련성이 낮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②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전제하는 “중대한 경제·금융상 위기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생략이 가능함.

결론적으로 긴박한 경제·금융상 위기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위변제 한도를 확대하려 한다면, 개정안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 입안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 보다 신속성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주의 노력
해태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33